

10. 宅地開發業務 保安管理指針

자료제공 : 건설교통부

- 택지 30260-154, '90. 12. 31 시행
- 택지 30260-31217, '91. 11. 9 시행(일반문서로 등급변경)
- 택지 30260-26, '92. 1. 13 시행(세부시행지침 개선)

1. 목적

- 최근 도시개발, 택지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한 계획누설시비로 정부 공신력이 저하되고 개발정보의 누설에 따라 부동산 투기원인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
-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업무와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여 정부 공신력제고와 부동산 투기방지에 기여하고자 함

2. 기본방향

- 택지개발업무에 참여하는 요원의 서약 집행, 보안교육 등 실시로 사전 보안대책 강화
-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관계서류 입안단계에서부터 지정·고시때까지 “대외비”로 생산 관리
-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
-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유관부서 협의 및 회의시 보안대책 강구

3. 세부시행지침

-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

- 택지시행자 또는 관계 공무원은 계획입안 참여시 필요인원을 최소화하고 보안각서를 징구
-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서류는 계획입안시부터 지정·고시때까지 또는 지정제외결정시까지 “대외비”로 생산 관리
다만, 지정제외결정(신청자에게 반려되는 경우를 포함)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동 관계도면을 파기 조치하고 기타 일건서류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함.
- 관계부처 협의시 협의회신문과 시행자 의견 조정관계서류는 도면 등이 포함되거나 내용상 대외비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때에만 “대외비”로 생산·관리하고,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문서로 생산 관리
- 지구지정을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과 심의후 지정·고시할 때의 서류 및 지정제외결정 통보시의 서류는 일반문서로 생산 관리
- 택지개발계획 수립
 - 택지개발계획수립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 보안각서 징구 등 시행자 책임하에 보안대책 수립 시행

4. 시행상 유의사항

- 1991. 1. 1 이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서류 및 관계도면에 대해서는 본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.
- 현재 건설부에 지구지정신청하여 지정추진중인 지구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관리할 필요는 없으나 본 지침에 준하여 보안관리에 주의한다.
- 기타 사항은 보안업무관리법령 및 지침에 의한다.
- 개정 보완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택지 30260-154(1990. 12. 31)호로 시달(협조통보)된 “택지개발업무 보안관리지침”에 의함
- 1992. 1. 15 현재 지구지정신청하여 관계부서 협의중에 있거나 시행자 의견조정 중에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신청건에 대하여는 본 개선지침에 의하여 처리토록 함.

5. 기타 행정사항

-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신청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최소면적은 66,000m²이상을 원칙으로 하되, 주변지역과 연계 개발의 필요성과 택지개발촉진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개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'91년도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신청은 상·하반기로 구분하여 상반기분은 2. 28까지, 하반기분은 6. 30까지 지정 신청한다.
-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후 3년이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못할 지구는 지구지정 신청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예정지구 업무를 대외비로 관리함에 따라 최초 후보지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부서 협의과정에서 부동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
제 출 서 류 명	제출부수	비 고
· 택지개발예정지구 후보지 조사서	각 26부	
· 위치도(1/25,000)	"	
· 지형도(1/5,000)	"	
· 지적도(1/1,200)	각 1부	
· 지구별 현황자료(8절, 1/25,000 도시계획 원도)	"	· 사업기간 명시, 현황사진 첨부
· 지구계 결정사유 도면(8절, 1/5,000)	"	· 구체적 사유명시
· 당해지역 도시현황 및 택지수급계획	"	
· 택지개발사업 설명자료(도시국)	각 26부	
· 택지갈사업 및 환경현황조사자료(환경처)	각 1부	
·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현황조사자료(농림수산부)	각 1부	· 시·도지사 종합의견서, 군수 · 시장 심사의견서 등 자료
· 편입계획 임야현황조서(산림청)	각1부	

- 사업시행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구지정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지정단계에서 사업 시행자 변경요구가 없도록 한다.
- 지구지정 신청시구비서류는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아래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.
- ※ 협의 소요부수
 - 건설부 7부(택지개발과 1, 국토계획국 1, 토지국 1, 도시국 1, 수자원국 1, 상하수도국 1, 도로국 1)
 - 환경처 5부, 내무부 1부, 국방부 7부, 농림수산부 1부, 교통부 1부
 - 산림청 1부, 철도청 1부, 주공 1부, 토개공 1부, 지자체 1부(주공, 토개공신청지구)
- 기타 택지개발예정지구 경계결정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택지 30260-16360('90. 6. 29)호로 시달한 “택지개발편람” 및 택지 01510-18432('91. 6. 29)호로 지시한 “택지개발예정지구의 후보지 선정철저”내용을 참고하여 후보지 선정에 철저를 기한다.
- 각 시·도 및 주공, 토개공에서는 본 지침에 의거 자체 세부보안관리지침을 수립·시행한다.

주택회보